

[별지 제3호 서식]

정 건 서

후보자 성명	이 재 민
정건서	
IFRS17 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계리사회는 특정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계리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 모두의 자량이 되는 계리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운영체계 구축 회장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독 체제에서 벗어나, 현직·전직·차기회장이 함께하는 3인 회장단 체제를 도입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회장과 집행위원을 회원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를 검토하여 모든 회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투명한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주니어 계리사, 생보, 손보 대표를 집행위원회에 선출직으로 참여시켜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겠습니다. 둘째, ‘자율규제기구’ 격상 및 계리사법 재추진으로 계리사회의 위상 제고 감독당국과의 협의하여 계리사 등록 위탁,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마무리하는 한편, 계리사법 제정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IFRS17 시대에 필수적인 계리실무기준 제·개정의 주체로서 계리사회가 선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자율규제기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셋째, 대외협력 강화, 회원 규모 확대 등으로 강한 계리사회 만들기 감독당국과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언론 등 외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활동 외국계리사를 대상으로 별도 회원 그룹을 신설하고 계리사 지망 대학생들을 예비회원으로 흡수하여 미래 세대를 육성하여 계리사회 외연을 확장하고, 계리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강한 전문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저의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모두 준비된 실천 계획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즉시 구성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상세 내용 : 첨부 1, 첨부 2, 첨부 3 ***	

한국보험계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 1)

28대 계리사회 회장 임후보 공약

- 회원 모두 다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화된 운영체계 구축
- 계리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기구로의 발돋움

1. 지배구조 개선

- 의사결정 구조를 다수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다양성 원칙(DE&I)을 도입

* 첨부 3 참고 : 해외사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비교 조사 및 시사점

* 3인 회장단 체제는 2018년 25대 회장 공약사항이었으며 당시 이사회 상정 후 과도기로 회장 임기 2년으로 정하고 일시 보류된 사항임

1) 회장 단독 체제에서 3인 회장단 체제로 확대

- 계리사회 주요 사항에 대해 현직 회장, 전직회장, 차기회장이 함께 집단적 의사결정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전에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전직회장은 임기 후 1년간 회장단에 참여
- 대외적으로는 회장이 대표
- 회장 임기는 현행 2월 정기총회 대신 6월 총회에서 시작

2) 집행위의 참여 구룹 다양화 및 정관 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

- 위원회 중 운영 등 핵심 사안의 의사결정을 하는 집행위원회에 여성 계

리사 대표, 주니어 계리사 대표(40대 이하, 임기 2년)를 1명씩 선출직으로 참여(DE&I 실현)

- 매년 생보, 손보 1명씩 집행위원을 총회에서 선출 (임기 2년, 투표권은 해당 그룹에 한정)
- 집행을 집행이사회로 개칭, 정관에 이사회 산하 의사결정기구로 명문화

※ 개선 후 집행위 구성 (총 11인)

회장단 3인, 각 부문 대표(생보 2인, 손보 2인, 여성 2인, 주니어 2인)

*옵저버(투표권 무) : 사무국장, 특별기구 장(계리연수원장, 계리연구원장)

3) 회장 및 집행위원 선거 방식의 선진화

- 회장 및 집행위원 선거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직선제 검토

※ 현재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일반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데 한계

- 업무 연속성 및 동기부여를 위해 회장 입후보 자격에 ‘계리사회 운영에 3년 이상 참여한 자’를 포함

- 회장 등 선출직 임원 선거를 6월 총회에서 실시하고 임기도 이에 맞춤

* 계절, 계리업무 특성 상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하여, 향후 총회 일정은 6월에서 4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4) 사무국장의 지위 격상 및 정기적 평가

- 사무국, 사무국장 명칭을 ‘사무처’, ‘사무처장’으로 변경

- 사무처장을 임원 신분으로 격상, 경비 지출 등 계리사회의 일상적 사무를 책임 집행
- 업무수행도를 회장단이 매년 평가 후 연봉 산정
- 사무처장 선임은 공개 모집, 회장단이 다면 평가 후 집행위가 추천, 이사회 상정
- 사무처장 임기는 2년 후 매년 갱신하고 회장단에 의한 업무 평가 후 이사회 보고 등 통제 방법 마련

2. 계리기준원의 독립성 강화

- 감독당국의 가정관리 감독 강화에 부응하여 계리기준 자율규제기구로서 위상 정립
 - 계리기준원장은 집행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 계리기준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 도모를 위하여 1년 전에 차기 원장을 선출
 - 계리기준원 협의체에는 계리 외에도 보험유관단체들이 참여하여 구성
 - 계리사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계리기준원 협의체에 참여하되, 투표권 미부여
 - 계리기준원의 사무는 계리사회 사무국이 지원하되, 별도 재원 확보 및 예산·결산 회계의 독립채산제 실시

3. 대외 협력 강화

- 계리사의 인지도 향상 및 권익 증진, 그리고 계리사회의 권한 확보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외 협조체제 구축

1) 감독당국과의 협의 채널 내실화

- 계리사 등록,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위해 감독당국과 정기적 협의 채널 마련
- 계리사회의 현안문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감독당국에 건의

2) 언론과의 유기적 협조 강화

- 계리사회의 총회, 세미나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언론 초청, 주요 현안과 제에 대한 언론 브리핑 실시 등 언론과의 교류를 확대

4. 계리사회 현안과제 실현

- 계리사의 역할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계리사회의 자율규제기구 법제화

1) 감독당국과의 정기적 협의 채널 구축

- 계리사 등록, 보수교육 의무화, 윤리기준 제정, 계리법인 운영 공시 등의 법제화를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계리사법 제정 추진 중단에 따른 보완)
- 병행하여, 계리사법 제정 재추진을 위해 감독당국과 협의 노력

2) 계리실무기준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위상 확립

- 계리실무기준 제·개정 기구로서 계리사회가 선정되도록 감독당국에 지원 협의 및 촉구 (IFRS17 정착과 계리사회 위상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

5. 계리사회 회원 확대 등

■ 계리사회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회원 수 증가를 통한 영향력 배가 필요

1) 외국계리사 회원 신규 설정

-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외국계리사들이 다수이고 IFRS17 도입으로 동일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외국계리사를 한국계리사회 회원으로 인정할 만한 환경 조성
- 정회원, 준회원과 별도로 회원그룹을 설정하고 외국계리사회원의 가입 자격과 권한은 별도로 설정

2) 예비계리사 회원 신규 설정

- 계리사를 지망하는 각 대학의 대학생들 및 계리사시험 준비생들을 한국계리사회 회원으로 흡수
- 별도 회원그룹을 설정하고 계리사시험 관련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외국 사례: Actuary Student라는 명칭으로 별도 모임 행사 개최

6. 계리학 연구 지원 강화

- 국내 계리발전을 위해 계리 실무만이 아니라 이론적 토대를 강화할 필요
 - 보험연합학술대회(한국보험학회 주관)의 계리 세미나에 발표한 학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계리사회 내 계리연구원 주관으로 별도 교류 모임을 정례화하고 연구 지원 활성화

7. 기타

- 지배구조 개선 마련 및 정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차기회장을 선출하여 새로운 지배구조 체계를 조기에 구축
 - 지배구조 개선 특별위원회(TF) 구성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
 - 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관 개정안에 대해, 정기총회 의결 후 감독당국 승인을 받는 대로 차기회장 선출

[추진 일정 계획]

2025년

9월 지배구조 개선 특별위원회(TF) 구성

10월~11월 지배구조 개선 및 정관개정안 초안 마련

12월 이사회에 초안 상정 및 의견 수렴

2026년

1월 정관개정안, 회원 대상 공개 의견수렴 및 최종안 마련

2월 이사회 및 총회 최종안 상정

3월 금융위 승인 신청

(첨부 2)

한국보험계리사회 지배구조 개선 경과

2010년부터 IFRS 4 도입을 앞두고 계리사 역할 및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보험계리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후 계리사회는 선진화된 지배구조와 국제화를 지향하며 한단계 한단계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왔다.

1. 지배구조 개선 출발

2010. 6. 9. 계리사회 일부 회원들이 구성한(9명 참여) **계리사회발전위원회**는 ‘**계리사회 발전방안**’을 작성하여 당시 회장에게 건의하였다. 그 방안에는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연임 제한과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한 지배구조 개선을 담고 있었다. (참고 : 2010년 계리사회 발전방안)

이에 당시 회장은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며칠 후 전체 회원이 모이는 6월 총회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리사회 내부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계리사회는 ‘**계리사회 발전방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개선사항들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여** 감독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2003년부터 20대·21대·22대 3회 연임한 회장은 2012년 퇴임하였다.

2. 단기적 방안 실현 : 회장 연임 제한

2012년 새로 취임한 23대 회장은 그동안 논의를 진행했던 정관개정안을 마무리하여 총회 및 금융위 승인을 받아 2013. 10. 15. 정관이 개정되었다. 특히 회장 개인적 목적을 위한 장기 재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회장의 임기는 3년 임기는 그대로 두고 “1회 연임”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23대 회장은 24대 회장에 입후보하여 재선임된 후 2018년 퇴임하였다.

3. 공동체제 도입 시도

2018년 3월 새로 취임한 25대 회장은 4명이 회장 입후보한 가운데 공약사항으로 ‘운영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다수의 참여 유도, 차기회장 미리 선출, 향후 회장단(현직, 차기, 전직 회장) 공동체제“을 골자로 하는 회장 임기 및 의사결정에 관한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하였다. (참고 : 2018년 25대 회장 입후보 운영소견서 및 공약집)

2020년 6월 이사회에서는 해외사례(캐나다, 미국)를 기초로 지배구조 개선 세부사항이 보고되었으나, 당분간 추진력있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참고 : 2020년 임원워크숍 및 이사회 발표자료)

4. 과도적 조치 : 회장 2년 단임

2021년 25대 회장이 다시 26대 회장 입후보하여 경쟁자와 경합하여 당선되었다. 25대·26대 회장은 2023년 계리사회를 공익단체라는 성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관의 목적에 “공익 기여“를 포함시키고, 과거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과도기적 방안을 작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정관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차기 회장은 현직 회장 퇴임 1년 전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참고 : 정관변경 사유서 2022년)

그리고 25대·26대 회장은 2024년 2월 정기총회에서 퇴임하였다.

27대 현 회장은 2023년 9월 선출되어 2024년 2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정관에 따라 ‘임기 2년, 단임’으로 임기를 시작하였고 회장 중심의 운영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5. 마무리 과제 : 회장단 공동체제 등 마련

2025. 8. 13. 새로운 정관과 내부에 따라 차기회장(28대) 입후보 공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앞으로 선출될 28대 회장은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계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단 공동체제 등 다수 참여에 의한 계리사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난 15년간 일관성있고 지속성있게 추진되어온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무리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첨부 3)

해외 보험계리사회의 지배구조 비교

1. 공통사항

-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협의체(회장단 포함, 20명 이내)가 최고지배기구가 됨
- 계리사회 업무 집행기구는 회장단을 포함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
 - * 영국은 최고지배기구가 회장을 선임
- 최고지배기구 및 집행기구는 분야,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구조를 가짐
- 사무총장은 최고지배기구가 선임하고 일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독립적인 역할과 지위를 보유

2. 국가별 특징

- 미국: 이사회가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 회원 중심의 전문자격증을 관리하는 계리사의 이익단체이며 별도 비영리 공익기구도 존재
- 호주: 회원 규모가 작아 운영체계가 단순하며, 평의회 및 회장단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의사결정체제로 운영
- 캐나다: 계리전문성감시위원회(Actuarial Profession Oversight Board)라는 특별기구를 통해 계리사회의 활동을 공공 이익에 부합하도록 감시
- 영국: 특수한 통치구조를 반영하여 최고지배기구인 평의회가 구성되고 집행은 평의회가 선임하는 집행이사회가 주도. 회장은 회원총회와 평의회 의장이며, 최고경영자(사무총장)의 역할과 위상이 더 높음

※ 한국 상황

1) 지배구조의 대표성

- 회장이 회원총회에 이사 선임(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
- 이사 선임(안) 작성 및 이사 외 임원 선출이 회장에게 관행적으로 위임
- 집행위 멤버인 부회장, 감사는 총회 위임으로 회장이 선임
- 회장은 임원·이사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

2) 의사결정 프로세스

- 최고의결기관은 총회이나, 실질적 의안 심의는 회장, 집행위가 수행
- 계리사회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중 하나에 불과
- 이사(회장, 이사 등 임원) 숫자가 최대 67명으로 심도있는 토론 곤란
- 집행위원회는 회장 산하 심의기구일 뿐, 집단 의사결정체계가 아님

3) 의사결정기구 구성

- 이사회 중 이사(60인 이내)는 회사별 안배에 따라 배분
- 이사회 구성은 총회 의결사항이나 회장 주도 하에 집행위가 결정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관련 규정이 없어 다양성 원칙(DE&I) 미적용

4) 사무국장의 역할 및 위상

- 사무국장은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
- 사무국장은 회장 신임 하에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하고 직원 신분